보 도 설 명 자 료
('16. 7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충전장소 따라...춤추는 전기차 연료비(서울경제 A01, 7.30)

1. 기사내용

□ 휘발유차보다 40% 싸다지만 가정서 충전 땐 '전기료 폭탄'

○ 일반 가전기기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돼 1kWh당 최고 약 709원의 요금이 부과될 것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

□ 전기차 충전은 **주택용 누진제가 아닌 별도의 요금제가 적용**되고 있어 상기 기사내용은 통상적인 사실과 다름

○ 전기차 **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비자는 완속 충전기를 보유***하게 되며, 충전기 사용에는 누진제가 아닌 **'전기차 충전 요금표'****가 적용

*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요건(대구, 대전, 포항 등): 완속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
**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하루를 최대/중간/경부하로 구분, 수요수준에 따라 차등적 요금 부과

○ 차량 구매 및 충전기 설치과정에서, 차량 판매사와 충전기 설치업체가 소비자에게 '전기차 충전 요금' 등 **관련 사항을 안내**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 장(044-203-5260)
김태현 사무관(044-203-5264)